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03.07(목) 12:00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정 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2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26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특산품의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탁 기간 및 갱신을 상위법령에 따라 운용하고자 이를 삭제(안 제5조)
- 나. 위탁의 취소사유중 제6조 수탁자 의무 위반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 변경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특산품의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